

『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9월 12일

나. 발 의 자 : 윤종호, 김태근, 박세진, 안주찬, 임춘구, 한성희(6인)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9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9월 26일

제2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

2016년 10월 21일

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종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윤 종 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학생들의 배움터인 구미시에 전입을 장려하여 정주의식 제고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,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위한 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양성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전입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 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-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제1항
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, 총무과 협의됨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대학생의 구미시로의 전입을 장려하여 인구증가 시책과 학생들의 정주의식 제고, 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 대학생에게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금액 등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 및 거짓신청에 따른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

• 본 조례안은

- 미래인재양성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통하여, 인구증가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전입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학업 정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- 인구증가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, 지원금 지급 및 지원대상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(부결)